상지대학교 학칙 개정안

1. 개정사유

○ 추가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○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 중 2020학년도 1학년 1학기 복학자 발생 등 여러 가지 학적변동으로 존치기간 내에 졸업이 불가함에 따라,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에 관한 경과조치를 변경하려는 것임

○ 기획예산팀-257(2020. 04. 10)호의 "상지대학교 학칙개정 알림"과 관련하여, 2021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재적생의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제44조(추가시험)

- "질병,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필요한 경우 총장이 추가시험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"로 문구수정
- "성적은 A학점이 될 수 없다"를 "성적은 B+이하로 평가한다"로 문구수정

○ 상지대학교 학칙 부칙 개정

-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에 관한 경과조치 중 존치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할 자를 포함하여 상지대학교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
- 2021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재적생의 경과조치 신설

3. 신·구조문대비표

규정명	상지대학교 학칙	구 분 : (제정·개정·폐지)
		입안부서 : 학사기획팀/학사운영팀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44조(추가시험) ① 질병, 병역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시험 개시 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44조(추가시험) ① 질병,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필요한 경우 총장이 추가시험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	문구수정
② 승인을 얻은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 응시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그 성적은 A학점이 될 수 없다.	② 추가시험은 그 성적을 B+이하로 평가한다.	문구수정
③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 전 소	③ (현행과 같음)	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정기일 내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.		
부칙 (기획예산팀-83, 2020.02.07.)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(편제) 및 제61조의2(대학·대학원등)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 (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인문사회과학대학 법부동산학부 부동산학전공의 재적생은 2022학년도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, 2023학년도 이후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인문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. ③ (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에 관한 경과조치)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간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2월 28일(3년제는 2022년 2월 28일)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상지영서대학교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존치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지대학교로 편입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편입학하는 상지대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부칙 (기획예산팀-83, 2020.02.07.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에 관한 경과조치)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간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2월 28일(3년제는 2022년 2월 28일)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상지영서대학교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존치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(못할 자 포함)가 있을 때에는 상지대학교로 편입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편입학하는 상지대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20.07.00)	문구수정
부칙 (기획예산팀-257, 2020.04.10.)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〈부칙 조 신설〉	부칙 (기획예산팀-257, 2020.04.10.) 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(학생의 정원은)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〔조 신설 2020.07.00〕〔개정 2020.07.00〕 제2조(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학과(전공)에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2021학년	조 신설 본조신설

현 행	개 정 안	비고
	도부터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. 1. “경상대학 관광여가기획학과”는 “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”로 2. “경상대학 호텔컨벤션학과”는 “경상대학 호텔컨벤션경영학과”로 3. “융합기술공과대학 응용물리전자학과”는 “융합기술공과대학 반도체물리전자학과”로 4. “융합기술공과대학 컴퓨터데이터정보학과”는 “융합기술공과대학 IT통계학과”로 5. “융합기술공과대학 스마트건설공학과”는 “융합기술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”로 ② “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영상광고학부”의 재적생은 2023년까지 동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, 2024년 이후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“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영상광고학과”의 재적생으로 본다. 〔본조신설 2020.07.00〕	
〈부칙 조 신설〉	제3조(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전 편제의 학부(학과),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 시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. 복수전공(부전공)하는 학생은 변경된 편제의 학과, 전공을 적용한다. 다만,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. 〔본조신설 2020.07.00〕	본조신설
	부칙 (기획예산팀-000, 2020.07.00)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07월 00일부터 시행한다.	